

2026학년도 특수교육 협력강사 채용 계획

2026년 4월 15일
소 사 고 등 학 교 장

1. 채용

- 가. 채용 권자: 소사고등학교장
-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분야	모집인원	근무장소	근무 내용	주요 자격 요건	우대 조건
특수교육 협력강사	1	소사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생활 지원 및 신변 처리 지원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협력 수업 실시 ○ 모둠 활동 및 수업 중 과제 점검, 개별화교육계획 실행 등 협력 지원 	<p>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p>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지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지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p>특수교육대상 여학생의 원활한 신변처리 지원 및 생활지도가 가능한 자 우대</p>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시강강사의 개념

- 시간강사는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 시 대체하는 계약제 교원으로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가. 신분
 - 교육공무원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 다. 계약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교과	인원	임용 기간	비고
특수교육 협력강사	1명	2026.04.20.~ 2027.01.06. (방학 기간 및 휴업일 제외)	※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여부 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 주당 20시간(협의 시간 1시간 포함) 주2-5일 시간제 근무

근로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 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시업	10시00분	10시00분	10시00분	10시00분	12시00분
종업	14시30분	14시30분	14시30분	14시30분	16시30분
휴게 시간	14시00분~ 14시30분 (30분)	14시00분~ 14시30분 (30분)	14시00분~ 14시30분 (30분)	14시00분~ 14시30분 (30분)	16시00분~ 16시30분 (30분)

- 교외 체험학습(당일)만 협력강사와 합의에 의해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가능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 2026학년도 부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협력강사 운영계획에 따름

바. 보수: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일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구분	수당단가	적용기준
가호	26,000원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24,000원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채용분야와 동일한 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	22,000원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4. 20.(월) 12: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심사):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연락

- 2차 심사 : 2026. 4. 21.(화) 본교 지정장소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4. 21.(화)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4. 15.(수) ~ 2026. 4. 20.(월)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sosago@korea.kr), 또는 방문 (소사고 3층 본교무실, ☎032-720-7153)

다. 학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78번길 22(소사본동)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스캔 첨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파일명: 지원자성함(지원교과목)-1개의 파일로 제출할 것.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안 내 참고) -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특수교육 협력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고등학교 문의(전화 032-720-7153)

